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의 변경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관련 관리를 강화함.
 -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톱킹범죄를 결격사유의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주요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 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의 갱신신청 전까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0조 및 제26조 등).

II. 검토의견

- 안 제13조제1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톱킹 범죄를 결격사유의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등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제18조제5항, 제29조제1항제4호 등에 따라 화약류 사용허가, 화약류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 면허 등에 준용·적용됨.

- 현행법과 개정안의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정안
모든 범죄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부터 5년 미경과(3)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부터 5년 미경과(3)
	-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미경과(3의2)
동법 위반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 미경과(6)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 미경과(6)
	벌금형 선고 후 5년 미경과(4)	벌금형 선고 후 5년 미경과(4)
특정강력범죄	-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부터 10년 미경과(3의3)
	징역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부터 5년 미경과(5)	-
	벌금형 선고 후 5년 미경과(5)	-
범죄단체조직, 상해·폭행, 아동청소년 강간·추행	-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부터 10년 미경과(3의3)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부터 5년 미경과(6의2)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부터 7년 미경과(6의2)
	벌금형 선고 후 5년 미경과(6의2)	벌금형 선고 후 7년 미경과(6의2)
스토킹범죄	-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부터 10년 미경과(3의3)
	-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선고 후 유예기간 종료부터 7년 미경과(6의2)
	-	벌금형 선고 후 7년 미경과(6의2)
벌금 전과자의 재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부터 5년 미경과(6의3)	벌금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부터 5년 미경과(6의3)

주: 괄호 안은 호 번호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략)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략)

그런데 안 제13조제1항과 관련한 안 부칙 제2조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의 신청 및 갱신 신청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8조제5항와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용·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접수된 <u>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u>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u>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u> 부터 적용한다.

- 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화약류 발파·연소, 폐기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 기준을 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위 각 조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위 각 조항은 결국 범죄구성요건을 고시에 위임하는 것임.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구 분	규율 대상	위반 시 제재
제18조제4항	화약류의 발파·연소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72조제4호)
제20조제5항	화약류의 폐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73조제2호)
제26조제4항	화약류 적재·운반 방법 및 표지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72조제4호)

규제에 대한 입법위임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참조).¹⁾

1)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범죄구성요건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특정한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실질도 그 대강의 내용은 이미 법률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등(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 더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입법위임이 가능함.

안 제18조, 제20조 및 제26조 등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하게 되는 기술 기준은 폭발성 물질인 화약류의 발파·폐기·운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이루게 되므로, 이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위임 입법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u>경찰청장이 고시하는</u>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u>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⑤ 화약류의 폐기는 <u>경찰청장이 고시하는</u>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총포·화약류의 폐기) ⑤ 화약류의 폐기는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u>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u>경찰청장이 고시하는</u>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u>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재판소는 범죄구성요건이라도 그 기준 마련에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고시에도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2017. 9. 28. 선고 2016헌바140 결정), 동 결정의 반대의견은 「大韓民國憲法」(헌법)이 국회입법 원칙을 천명하면서, 위임입법의 형식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는 없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범죄구성요건을 고시에 위임한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안 제22조제5항은 석궁 소지자가 소지허가 갱신 신청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는 석궁 소지자의 소지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현행 제22조제5항은 석궁 소지자에게 5년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소지자가 석궁을 사용하지 않아 석궁이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된 경우 소지자의 교육 이수를 유예하고 있음.

제22조(교육의 실시)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그러나 안 제16조에 의하여 석궁 소지허가에도 유효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진행하고 석궁 소지자는 3년마다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갱신 신청 전에 교육을 받게 하려면 단서의 교육 유예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22조(교육의 실시)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제16조 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u>전까지</u> . <u>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u>	제22조(교육의 실시)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제16조 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u>전까지</u> <u><단서 삭제></u>

-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성 완)